

“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”



# 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
(경유)

참 조

제 목 「건설폐기물법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



1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, 품질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(안)을 입법예고(입법예고기간 : '23.3.16 ~ 3.30) 하였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불임의 주요 내용 및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3월 28일 (화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	개정안	수정안	사유

불임 :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「건설폐기물법」 개정(안) 주요 내용 1부. 끝.

##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담당 권병문 부장 강한서 본부장 이원표 사무총장 공석 회장 박하준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 - 186호 (2023.3.21) 접수

우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일동제약빌딩 3층 / www.koras.org

전화 02-3476-7787 전송 02-3476-8464 / koras05@naver.com / 공개

#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「건설폐기물법」 개정(안) 주요 내용

## □ 개정(안) 주요 내용

### ○ 순환골재 정의의 명확화(안 제2조제7호)

- 순환골재는 「골재채취법」에 따른 천연골재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것으로 정의

### ○ 순환골재 품질 관리기준 강화 및 폐기물 제외 기준 마련(안 제35조)

- 중간처리업자에게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 및 품질검사 의무 부여
  - ※ 품질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, 품질기준 미준수 또는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

- 품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는 폐기물에서 제외

### ○ 순환골재의 사업장 외부보관기준 마련(안 제35조의 2)

- 사업장 외부에 순환골재를 보관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바닥, 벽,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되, 불가피한 사유로 보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조치 허용

- ※ 외부보관시설 설치기준, 예외사유 및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

### ○ 환경부장관에게 순환골재 품질 등 관리·감독권한 부여(안 제35조의 3)

- 환경부장관에게 순환골재 품질 등에 관한 관리·감독 권한 및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순환골재를 생산·판매한 자에 대하여 해당 순환골재의 폐기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 부여

## □ 시행일 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- ※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부터 적용